

# 덕진 거제의 봄 우선 분양전환 후 공가 세대 입주자모집공고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55-681-0809

주택 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 지역 여부	
국민주택	경상남도 거제시 거주자	경상남도 거주자 (거제시 제외)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 체결
일정	2026. 04. 30 (목)	2026. 05. 11 (월)	2026. 05. 12 (화)	2026. 05. 18 (월)	2026. 05. 21 (목) ~ 2026. 05. 22 (금)	2026. 05. 29 (금) ~ 2026. 05. 31 (일)

##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 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 사항은 사업 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10.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본 주택의 최초입주자모집 공고일은 2026.04.30.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 우선 공급 등의 판단 기준일입니다.
- 본 아파트는 (구)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건설 중형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된 주택이며, 임대 의무기간 5년이 경과 되어 우선 분양전환 후 잔여세대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포기 및 공가 세대]를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 본 아파트는 2015년 09월 08일 사용승인을 득한 국민주택이며, 국민주택기금(67.7016A형 세대당 채권최고액 68,040,000원), (67.8439B형 세대당 채권최고액 68,160,000원), (84.9785A형 세대당 채권최고액 85,320,000원), (84.9948B형 세대당 채권최고액 85,320,000원), (84.9134C형 세대당 채권최고액 85,320,000원)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으며, 주택도시기금의 일부 상환이 이루어져 있으니, 각 세대는 공급계약 전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열람을 통하여 미 상환된 국민주택 기금 융자금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내·외부 별도 보수공사 없이 현 상태로 분양하는 주택이므로 청약자는 시설물(보일러, 벽지, 장판, 상크대, 세대 열쇠 등)의 파손, 노후, 미비 및 청소 불량 등을 사유로 하자보수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별 임차인으로 거주하였던 입주자가 설치한 부합물은 당사에서 설치한 시설이 아니며, 분양가격에 해당 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입주 잔금 납부기한(입주 잔금 납부기한 이전에 입주 잔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입주 잔금 납부일을 말함) 후에 과세 기준일이 도래하는 제세공과금, 장기수선충당금, 법령의 제·개정 등에 따라 추가되는 시설투자비 등 제 부담금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금액은 **거제시 건축과-43875호 (2023. 11. 13)**로 분양전환 승인된 금액이 적용되며, 분양가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거제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 과열지역입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 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국민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해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나, 기존주택 당첨으로 인해 해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 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 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 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청약저축 또는 주택종합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 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분	청약저축 또는 주택종합청약저축 가입자
세대주 요건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순위내 동일지역 경쟁시	1)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 (매월 최대 25만원까지만 인정. 이하 동일)이 많은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산정 ) 2) 저축총액이 많은 자 3) 추첨(1순위 당첨자 결정 순차가 동일한 경우)	추 첨

※ 금회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계약이 해제됩니다.

※ 1순위 : 입주자저축(주택종합청약저축 또는 청약저축 이하 동일)에 가입하여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 매월 납입일에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일반공급 청약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 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제2조 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 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우주택 세대 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 소유 여부 판정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 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일반공급 입주자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 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 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 우선 공급을 적용하여 순위순차제를 적용하여 선정 (납입 인정금액 동일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 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 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로 함) 당사의 홈페이지(<https://duckjin.dimvis.com/>)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 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 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 배정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 종전통장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청약하는 경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 (예)청약예·부금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국민주택 청약시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산정(단 민영주택 청약시 기존 청약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입주자모집공고일 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 제1항 및 제6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 민간임대		○			○		
APT 잔여세대 (무순위 / 임의공급 / 불법행위 재공급)		○			X		

## 2 단지 유의사항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4.30.(목)**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금액은 **거제시 건축과-43875호 (2023. 11. 13)**로 분양전환 승인된 금액이 적용되며, 분양가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거제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 과열지역입니다.
- 본 주택은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제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자녀

양육, 형제 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외국인은 제외]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주택건설지역인 거제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국민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해당청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나, 기존주택 당첨으로 인해 해당청제한 기간 내에 있는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 체결
일 정	2026. 05. 11 (월)	2026. 05. 12 (화)	2026. 05. 18 (월)	2026. 05. 21 (목) ~ 2026. 05. 22 (금)	2026. 05. 29 (금) ~ 2026. 05. 31(일)
방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li> <li>▪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모바일) 청약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양사무실 (주소: 경남 거제시 아주2로 110 ) 104동 B2</li> </ul>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 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람이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 순위(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 저축요건을 충족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없습니다.

###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거제시 건축과-18660호 [2026.04.29.(우선 분양 전환 후 공가세대 승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2로 110

■ 공급규모 : 아파트 6개동(지하 2층, 지상 18층) 총 417세대 중 분양전환 후 잔여세대 376세대

■ 입주시기 : 2026년 05월 29일 이후

■ 공급대상 (단위: ㎡, 세대)

주택관리 번호	모델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약식표기	세대당 공급면적					세대별 대지 지분	전체 세대수	금회 공급세대수 (일반공급)	최하층 우선 배정세대수
				공급면적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포함)	계약 면적				
				주거전용	주거공용	계						
2026000185	01	067.7016A	67A	67.7016	25.4837	93.1853	33.9330	127.1183	41.7340	107	96	6
	02	067.8493B	67B	67.8493	25.1354	92.9847	34.0071	126.9918	41.8251	107	101	6
	03	084.9785A	84A	84.9785	26.0474	111.0259	42.5925	153.6184	52.3842	90	77	4
	04	084.9948B	84B	84.9948	25.8330	110.8278	42.6008	153.4286	52.3943	82	76	5
	05	084.9134C	84C	84.9134	26.4490	111.3624	42.5599	153.9223	52.3441	31	26	2
합 계										417	376	23

약식표기	주택형	공 급 세대수	층	공급금액	계약금 10%	잔금 90%
					(계약시 )	(계약 후 60일 이내 )
67A	067.7016A	96	1~18	144,255,000	14,425,500	129,829,500
67B	067.8493B	101	1~18	143,152,000	14,315,200	128,836,800
84A	084.9785A	77	1~18	175,635,000	17,563,500	158,071,500
84B	084.9948B	76	1~18	176,710,000	17,671,000	159,039,000
84C	084.9134C	26	1~18	173,606,000	17,360,600	156,245,400

※ 공급 호실별 세부금액은 별도 첨부가격 확인

**4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구 분	내 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제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분</li> <li>■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li> <li>■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 세대구성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국민주택 청약이 불가합니다.</li> </ul>								
청약통장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순위: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li> <li>- 2순위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으로서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분</li> </ul> </li> </ul>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당첨자 선정 순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쟁이 있을 시에는 ①순위(1순위→2순위) ② 순위 내 경쟁시 거주지역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거제시) 거주자→ 기타지역(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주자 ③ &lt;표1&gt; 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시 당첨자 선정 순차, ④ 동일순차 내 추첨순으로 선정합니다.</li> <li>-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주택형 내에서 동별, 층별, 향별 측 세대 구분 없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li> <li>- 1순위자는 접수 미달시에도 2순위자 신청일에 1순위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li> </ul> </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10px;"> <thead> <tr> <th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lt;표1&gt; 순위내 동일지역 경쟁시 당첨자 선정순차</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전용 면적 40㎡ 초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1순위</td> <td>1)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25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저축총액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산정) 2) 저축총액(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25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자 3) 각 순차 안에서 저축총액이 동일하여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4항 제2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순위</td> <td>추첨</td> </tr> </tbody> </table>	<표1> 순위내 동일지역 경쟁시 당첨자 선정순차			전용 면적 40㎡ 초과	1순위	1)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25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저축총액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산정) 2) 저축총액(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25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자 3) 각 순차 안에서 저축총액이 동일하여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4항 제2호)	2순위	추첨
<표1> 순위내 동일지역 경쟁시 당첨자 선정순차									
전용 면적 40㎡ 초과	1순위	1)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25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저축총액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산정) 2) 저축총액(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25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자 3) 각 순차 안에서 저축총액이 동일하여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4항 제2호)							
	2순위	추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국민주택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 ※ 국민주택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 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국민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 당첨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 분		처리방법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처리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 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처리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외 세대원이 중복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  
선 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 은행 구분 없이 1순위내 동일 지역 경쟁시 당첨자 선정 순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에서 동일지역내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 호수 추첨은 무작위로 결정함
- 동일 순위내 경쟁이 발생할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제시 거주 신청자가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시 1순위 신청자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시 예비 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 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 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 호수를 배정합니다. (동 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 입주자는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 되며 예비 입주자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 명단발표시 함께 발표됨)

비 고

- 무주택 기간 적용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3항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산정. 이 경우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30세가 되는날(주택공급신청자가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한다.  
2.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된날 (두차례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 인터넷 청약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공급계약체결전 사업주체로 제출 하시기 바라며, 현장방문 접수시에는 공급별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한다
- 청약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바랍니다,
- 주택소유 여부의 판단에있어 공급 신청 당시입력 값 (자료)으로 우선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전산 검색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 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확한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 주택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 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 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 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 취약 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li> <li>-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포함) 통장</li> <li>-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li> </ul>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table border="1"> <thead> <tr> <th>인감증명 방식</th> <th>본인 서명 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가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 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 국적동포 국내 거소 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li> <li>-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td> </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 서명 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가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 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 국적동포 국내 거소 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인감증명 방식	본인 서명 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가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 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 국적동포 국내 거소 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li> <li>-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p>마이 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li> <li>-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li>- <b>이용방법</b>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 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 정보 제3자 제공 요구</li> </ul>	
<p>당첨자발표 서비스</p>	<p>청약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조회방법</b>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li> <li>- <b>조회기간</b> : 2026.05.18.(월) ~ 2026. 05. 27(수) (10일간)</li> <li>-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li> <li>-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li> </ul>
	<p>문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제공일시</b> : 2026.05.18.(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li> <li>- <b>제공대상</b>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li> <li>*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ul>

6 당첨자 및 예비 입주자자격확인구비서류

■ 일반 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당첨자 자격확인 제출서류)

- ※ 당첨자 및 예비 입주자에 한해 당첨자 발표일 이후 계약체결 전 사업 주체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 기간에 제출하여야 함.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함
- ※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30)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제출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계약이 불가하며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제3자 대리계약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합니다.

구 분	서류형		해당 서류 상세	발 급 기 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 가 (해당시)			
공동서류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표 등본(전체)		성명,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세대원포함)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정보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주민등록표 초본(전체)		성명,주민등록번호 뒷자리,주소 변동사항,개인인적 사항변경 내용 등 모든 정보표기 형태로 발급
	○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국내거주기간 확인,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 출력여부를 "Y" 설정 하여 발급
		○	청약통장 순위 확인서		인터넷 청약홈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복무확인서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국내 거소 신고증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국내거소 신고증/국내거소 신고사실 증명 발급대상이 아닐 경우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 제출	

	○	주민등록표 등본(전체)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세대원포함)),주소 변동사항, 세대구성 정보등 모든 정보표기 형태로 발급
	○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 체류 증빙서류	본인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파견 및 출장명령서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는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 내역 등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①비자 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 계약서등 ※유학,연수, 관광, 단순 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증빙 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 사정 불인정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상세)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출생년도 부터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기간 지정으로 발급)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 국가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비자발급 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 국 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당첨자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 (국외 체류기간 연속 90일이하)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에는 단신 부임 인정 불가
부적격당첨 통보자	○	주택및분양권등 소유여부증명서류	해당 주택	* 일반주택: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 무허가 주택: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한 무허가 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 폐가 멸실주택:건축물 철거 멸실신고서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서류	-	해당 기관의 당첨 사실 무효확인서 등
3자 대리인 신청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본인 발급인감증명서에 한함 / 용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위임용(본인발급)
	○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 도장 날인
	○	주민등록증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신청 (고령자, 장애인, 미성년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에 한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제1호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자 또는 그세대에 속한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제2호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 공급신청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배정 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고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7 계약 체결**

■ **계약일정 및 계약금 납부**

구분	계약일정	장소	비고
당첨자 계약 체결	2026. 05. 29 (금) ~ 2026. 05. 31 (일) 시간: 09:00~16:30	(주소: 경남 거제시 아주2로 110) 덕진 거제의봄아파트 104동 B2 주민공동시설	일정 및 시간 변동 시 별도 안내

- ※ 계약금 납부 : 분양대금 납부계좌 입금 후 입금증 분양사무실 제출 (분양사무실에서 계약금 수납 불가)
- ※ 순위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의거 하여 공급할 예정임.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 하더라도 계약 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아래 “계약 체결조건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 고
BNK 경남은행	603-35-0001718	덕진종합건설 주식회사	

- 분양대금은 약정된 계약금, 잔금 납부일에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입금 시 비교란에 동·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당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음
- 상기 계좌에 입금하여야 유효하며 동 예금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어떤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무효로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바람.(예시:101동 104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01010104 홍길동으로 기재하시기 바람)
- 무통장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멸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음,
- 계약체결시 무통장 입금증 지참요망 (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시 구비서류**

구 분	서류유형		해 당 서 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 인 계 약 시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본 인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용도: 주택공급계약용(본인 발급용)※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인감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
		○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 하는 서류 일체	해 당 자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제 3 자 대 리 인 신 청 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 약 자	용도: 주택공급계약 위임용(본인 발급용)
	○		위임장	청 약 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분양사무실 비치)
	○		대리인의 신분증, 인장	대 리 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외국국적 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함.
- ※ 상기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30)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단 변경이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시 외국인은 공금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 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 이력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아래 참조)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할 내용: 세대 구성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 변동일/변동 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뒷자리
  -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시 기재(포함) 되어야할 내용: 개인인적 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전체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계약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의 변조 및 도용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 통장 재사용이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부정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 관련 예금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자의 청약관련 예금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 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정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지정 계약 기간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 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관리 됩니다.
- 계약 및 부동산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 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대상이며 인지세법 제3조에 의거 본 아파트의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과세문서)입니다.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종이 문서용 전자수입 인지를 첨부하여 인지세를 납부 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3천만원이하	3천만원 초과~ 5천만원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본 아파트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계약 체결시 사업 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단 부동산거래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공급계약 체결시 사업주체에 신고를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실제 잔금납부일 또는 잔금납부약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날 이후에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계약자의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 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 이중 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①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 중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주택 전산망을 이용한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시 제출서류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부적격자로 판정 된자는 통보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 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기한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② 계약체결 후에라도 부적격 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 합니다. 단, 부적격당첨자는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 1년,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③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7일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 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부적격 또는 부정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 에게 귀속됩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한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자가 있는 경우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6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 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 의사를 표시한 예비 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 계약 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시 주택가격과 별도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인 관리비 예치금을 관리사무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관리예치금은 관리소운영자금으로 충당되는 자금으로서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임)
- 계약자는 잔금납부 약정일 또는 실입주일(열쇠 수령일) 중 빠른날로부터 잔금완납이나 입주 또는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을 해약 (해지)하는 경우 계약서 등에 따라 주택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 각 세대별 거주했던 임차인 설치한 부합물은 사업 주체에서 설치한 시설이 아니며 분양가격에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계약자가 공급금액 잔금을 납부약정일을 경과하여 납부할 경우에는 실제 납부일까지의 경과일수에 대하여 연5%의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납부 하여야 하고 선납 할인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자는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청약 접수일자과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타주택에 당첨이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합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소음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등의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기타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9조를 준용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공급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주택공급신청자는 필히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분양대금 대출 관련

- 본 아파트는 각 세대별로 일정액의 금융기관 용자금이 존재하여 분양시 매수자에게 대한 되어야 하나,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대한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사업 주체가 지지 않습니다.
- 개인의 신용상태 및 소득등에 따라 대출한도가 변동될 수 있으니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람. 이에 따른 대출불가 및 축소등의 사유로 인한 개인적인불 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된 책임은 사업 주체가 지지 않습니다,
- 계약자 본인 사정에 의하여 잔금 대출이 불가한 분은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못할 경우 해당 연체일자에 대하여 별도의 연체료를 추가로 납부 하여야 함. 이 경우 연체이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가계자금 대출 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가계자금 대출이자율과 연체 가산율을 합산한 이율로 합니다.
- 대출 관련 세부사항은 계약자가 직접대출 은행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잔금 대출 관련은 사업 주체를 통한 집단대출이 불가하며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 하거나 대출이 불가 할수도 있으므로 계약자는 금융 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 참고사항

#### ■ 주택 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 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보는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3. 개인 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

(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9 기타 사항 및 단지 여건**

■ 부대복리시설의 내용

부대 복리시설
관리사무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어린이 놀이터, 보육시설 등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제6조의 2에 따른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구 분	주차장 차로의 넓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지하1층, 지하2층	6m, 6.5m	2.3m

※(총 주차대수 455대: 지상 69대, 지하 386세대)

■ 사업시행 주체, 시공사

구 분	상 호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시행 주체	덕진종합건설주식회사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77. 906 호	609-81-38753
시 공 사	덕진종합건설주식회사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77. 906 호	609-81-38753

■ 건축감리

구 분	상 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감리금액(VAT 별도)
건축감리	(주)화신 종합 기술단 건축사사무소	-	-	758,936,500 원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의거,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구 분	내 용	비 고	
의무사항 이행 여부	고기밀창호	적용	
	고효율기자재	적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고효율 조명기구	적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절수기기	적용	

단열재설치 (설계기준 건축부분 의무사항 )	-	적합	
벽체 및 창호의 단열성능	-	적합	
열원 시스템	개별난방 (87%)	적합	

■ 근저당권(국민주택기금) 및 신탁등기가 설정되어있는 세대에 대하여 분양 잔금과 설정해제를 동시 이행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청약 당첨이후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의 전세금 대출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상환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해당 전세금 대출은 해당 은행에 문의)

■ 세대 방문 확인

- 세대 방문 기간: 계약체결일: [10:00~16:00]
- 방문 가능 호수는 현재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공실만 가능하니 방문 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유의사항

1.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신청자가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 하더라도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람.
2. 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3.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동일한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4. 이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됨
5. 세대당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정산하기로 함
6.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람.  
-평형 환산방법: 형별면적(㎡) x 0.3025 또는 형별 면적(㎡)÷3.3058
7. 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 (인테리어 부동산중개등)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임
8. 본 계약물건의 계약체결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지구내시설물의 변경 단지내아파트 동별, 행,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도로, 비행기 소음등 사생활 권이 침해 될 수 있음
9.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일조량등에 차이가 있을수 있음
10. 층 호수는 호수배치도를 필히 참조하시기 바람
11. 단지에 설치되어지는 부대복리시설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대해서는 실입주 후 가칭 주민자치협의기구에서 결정하여 운영되어지며 입주인 전체의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12. 주차장의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및 이에 따른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함
13. 지하주차장 진입의 유효높이는 2.3M이하로 탑차 및 이삿짐 사다리의 차량의 출입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14. 단지내의 도로 및 단지내 비상차로등에 인접한 일부세대에는 차량 소음 및 불빛 등에 의한 사생활권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15. 아파트의 주거공용면적 (계단실 코아) 및 기타공용면적 (부대복리시설 기계실 주차장등)은 각 단지별 세대전용면적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배분 됨
16. 부대 복리시설등 단지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동별 사용시 계단실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함
17. 각 단지별 계획된 부대복리시설로 인해 인근 해당 동 및 세대의 사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음.
18. 발코니 확장세대를 공급함에 따라 세대별 조건 및 필수설비시설물의 위치 조정등으로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등이 상이 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에는 외기 온도 차가 심할 경우나 환기 등 관리 소홀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19. 본 아파트의 서비스 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면적증감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20. 단지 배치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 차량의 진입이 어려울 수 있음
- 21. 지하주차장 출입구와 인접한 저층세대는 지하주차장 출입구로 인해 세대 조망이 일부 차폐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이용차량의 소음에 의해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22. 지하주차장 채광 및 급/배기를 위하여 지상에 돌출된구조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저층세대는 시야차폐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23.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홍통 및 드레인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확장선택시 가구를 설치하여 처리하더라도 미확장세대의 발코니 사용 및 우천시 소음등이 발생할 수 있음
- 24. 주민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당사가 시공하였으므로 기타 기기 및 비품은 입주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설치하여야 함
- 25. 마감 자재 내용은 세대 타입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평면 및 마감재와 단지내 시설에 대한 정보를 취득한 후 청약신청 및 공급계약을 체결 하여야 함
- 26. 본 공고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따름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공급 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입주자 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시는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 ※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분양사무소

분양문의	분양사무실 위치
055-681-0809	분양사무소(주소: 경남 거제시 아주2로 110) 덕진 거제의봄아파트 104동 B2 주민공동시설

순번	약식표기	대상세대		분양가격			비 고
		동	호	분양가격	계약금	잔금	
					(계약시)	(계약후 60일 이내)	
1	67B	101	101	143,152,000	14,315,200	128,836,800	
2	67B	101	201	143,152,000	14,315,200	128,836,800	
3	67B	101	301	143,152,000	14,315,200	128,836,800	
4	67B	101	401	143,152,000	14,315,200	128,836,800	
5	67B	101	601	143,152,000	14,315,200	128,836,800	
6	67B	101	701	143,152,000	14,315,200	128,836,800	
7	67B	101	801	143,152,000	14,315,200	128,836,800	
8	67B	101	901	143,152,000	14,315,200	128,836,800	
9	67B	101	1001	143,152,000	14,315,200	128,836,800	
10	67B	101	1201	143,152,000	14,315,200	128,836,800	
11	67B	101	1301	143,152,000	14,315,200	128,836,800	
12	67B	101	1401	143,152,000	14,315,200	128,836,800	
13	67B	101	1501	143,152,000	14,315,200	128,836,800	
14	67B	101	1601	143,152,000	14,315,200	128,836,800	
15	67B	101	1701	143,152,000	14,315,200	128,836,800	
16	67B	101	1801	143,152,000	14,315,200	128,836,800	
17	67A	101	102	144,255,000	14,425,500	129,829,500	
18	67A	101	302	144,255,000	14,425,500	129,829,500	
19	67A	101	402	144,255,000	14,425,500	129,829,500	
20	67A	101	602	144,255,000	14,425,500	129,829,500	
21	67A	101	702	144,255,000	14,425,500	129,829,500	
22	67A	101	802	144,255,000	14,425,500	129,829,500	
23	67A	101	902	144,255,000	14,425,500	129,829,500	
24	67A	101	1002	144,255,000	14,425,500	129,829,500	
25	67A	101	1102	144,255,000	14,425,500	129,829,500	
26	67A	101	1402	144,255,000	14,425,500	129,829,500	
27	67A	101	1502	144,255,000	14,425,500	129,829,500	

28	67A	101	1602	144,255,000	14,425,500	129,829,500	
29	67A	101	1702	144,255,000	14,425,500	129,829,500	
30	67A	101	1802	144,255,000	14,425,500	129,829,500	
31	67A	101	103	144,255,000	14,425,500	129,829,500	
32	67A	101	203	144,255,000	14,425,500	129,829,500	
33	67A	101	303	144,255,000	14,425,500	129,829,500	
34	67A	101	403	144,255,000	14,425,500	129,829,500	
35	67A	101	603	144,255,000	14,425,500	129,829,500	
36	67A	101	703	144,255,000	14,425,500	129,829,500	
37	67A	101	803	144,255,000	14,425,500	129,829,500	
38	67A	101	903	144,255,000	14,425,500	129,829,500	
39	67A	101	1003	144,255,000	14,425,500	129,829,500	
40	67A	101	1103	144,255,000	14,425,500	129,829,500	
41	67A	101	1203	144,255,000	14,425,500	129,829,500	
42	67A	101	1303	144,255,000	14,425,500	129,829,500	
43	67A	101	1503	144,255,000	14,425,500	129,829,500	
44	67A	101	1703	144,255,000	14,425,500	129,829,500	
45	67A	101	1803	144,255,000	14,425,500	129,829,500	
46	67B	101	104	143,152,000	14,315,200	128,836,800	
47	67B	101	204	143,152,000	14,315,200	128,836,800	
48	67B	101	304	143,152,000	14,315,200	128,836,800	
49	67B	101	404	143,152,000	14,315,200	128,836,800	
50	67B	101	504	143,152,000	14,315,200	128,836,800	
51	67B	101	804	143,152,000	14,315,200	128,836,800	
52	67B	101	904	143,152,000	14,315,200	128,836,800	
53	67B	101	1004	143,152,000	14,315,200	128,836,800	
54	67B	101	1104	143,152,000	14,315,200	128,836,800	
55	67B	101	1204	143,152,000	14,315,200	128,836,800	
56	67B	101	1304	143,152,000	14,315,200	128,836,800	
57	67B	101	1404	143,152,000	14,315,200	128,836,800	
58	67B	101	1704	143,152,000	14,315,200	128,836,800	
59	67B	101	1804	143,152,000	14,315,200	128,836,800	
60	84B	102	101	176,710,000	17,671,000	159,039,000	

61	84B	102	201	176,710,000	17,671,000	159,039,000	
62	84B	102	301	176,710,000	17,671,000	159,039,000	
63	84B	102	401	176,710,000	17,671,000	159,039,000	
64	84B	102	501	176,710,000	17,671,000	159,039,000	
65	84B	102	601	176,710,000	17,671,000	159,039,000	
66	84B	102	701	176,710,000	17,671,000	159,039,000	
67	84B	102	801	176,710,000	17,671,000	159,039,000	
68	84B	102	901	176,710,000	17,671,000	159,039,000	
69	84B	102	1101	176,710,000	17,671,000	159,039,000	
70	84B	102	1201	176,710,000	17,671,000	159,039,000	
71	84B	102	1401	176,710,000	17,671,000	159,039,000	
72	84B	102	102	176,710,000	17,671,000	159,039,000	
73	84B	102	202	176,710,000	17,671,000	159,039,000	
74	84B	102	302	176,710,000	17,671,000	159,039,000	
75	84B	102	402	176,710,000	17,671,000	159,039,000	
76	84B	102	602	176,710,000	17,671,000	159,039,000	
77	84B	102	702	176,710,000	17,671,000	159,039,000	
78	84B	102	802	176,710,000	17,671,000	159,039,000	
79	84B	102	902	176,710,000	17,671,000	159,039,000	
80	84B	102	1002	176,710,000	17,671,000	159,039,000	
81	84B	102	1102	176,710,000	17,671,000	159,039,000	
82	84B	102	1302	176,710,000	17,671,000	159,039,000	
83	84B	102	1402	176,710,000	17,671,000	159,039,000	
84	84A	102	103	175,635,000	17,563,500	158,071,500	
85	84A	102	303	175,635,000	17,563,500	158,071,500	
86	84A	102	503	175,635,000	17,563,500	158,071,500	
87	84A	102	603	175,635,000	17,563,500	158,071,500	
88	84A	102	703	175,635,000	17,563,500	158,071,500	
89	84A	102	903	175,635,000	17,563,500	158,071,500	
90	84A	102	1203	175,635,000	17,563,500	158,071,500	
91	84A	102	1403	175,635,000	17,563,500	158,071,500	
92	84A	102	1503	175,635,000	17,563,500	158,071,500	
93	84A	102	1603	175,635,000	17,563,500	158,071,500	

94	84A	102	1703	175,635,000	17,563,500	158,071,500	
95	84A	102	1803	175,635,000	17,563,500	158,071,500	
96	84B	102	104	176,710,000	17,671,000	159,039,000	
97	84B	102	204	176,710,000	17,671,000	159,039,000	
98	84B	102	304	176,710,000	17,671,000	159,039,000	
99	84B	102	404	176,710,000	17,671,000	159,039,000	
100	84B	102	504	176,710,000	17,671,000	159,039,000	
101	84B	102	604	176,710,000	17,671,000	159,039,000	
102	84B	102	704	176,710,000	17,671,000	159,039,000	
103	84B	102	804	176,710,000	17,671,000	159,039,000	
104	84B	102	904	176,710,000	17,671,000	159,039,000	
105	84B	102	1004	176,710,000	17,671,000	159,039,000	
106	84B	102	1104	176,710,000	17,671,000	159,039,000	
107	84B	102	1204	176,710,000	17,671,000	159,039,000	
108	84B	102	1304	176,710,000	17,671,000	159,039,000	
109	84B	102	1404	176,710,000	17,671,000	159,039,000	
110	84B	102	1604	176,710,000	17,671,000	159,039,000	
111	84B	102	1704	176,710,000	17,671,000	159,039,000	
112	84B	102	1804	176,710,000	17,671,000	159,039,000	
113	84C	103	101	173,606,000	17,360,600	156,245,400	
114	84C	103	201	173,606,000	17,360,600	156,245,400	
115	84C	103	301	173,606,000	17,360,600	156,245,400	
116	84C	103	401	173,606,000	17,360,600	156,245,400	
117	84C	103	501	173,606,000	17,360,600	156,245,400	
118	84C	103	601	173,606,000	17,360,600	156,245,400	
119	84C	103	701	173,606,000	17,360,600	156,245,400	
120	84C	103	801	173,606,000	17,360,600	156,245,400	
121	84C	103	901	173,606,000	17,360,600	156,245,400	
122	84C	103	1001	173,606,000	17,360,600	156,245,400	
123	84C	103	1101	173,606,000	17,360,600	156,245,400	
124	84C	103	1201	173,606,000	17,360,600	156,245,400	
125	84C	103	1301	173,606,000	17,360,600	156,245,400	
126	84C	103	1501	173,606,000	17,360,600	156,245,400	

127	84A	103	102	175,635,000	17,563,500	158,071,500	
128	84A	103	202	175,635,000	17,563,500	158,071,500	
129	84A	103	402	175,635,000	17,563,500	158,071,500	
130	84A	103	502	175,635,000	17,563,500	158,071,500	
131	84A	103	602	175,635,000	17,563,500	158,071,500	
132	84A	103	702	175,635,000	17,563,500	158,071,500	
133	84A	103	802	175,635,000	17,563,500	158,071,500	
134	84A	103	902	175,635,000	17,563,500	158,071,500	
135	84A	103	1002	175,635,000	17,563,500	158,071,500	
136	84A	103	1102	175,635,000	17,563,500	158,071,500	
137	84A	103	1202	175,635,000	17,563,500	158,071,500	
138	84A	103	1302	175,635,000	17,563,500	158,071,500	
139	84A	103	1402	175,635,000	17,563,500	158,071,500	
140	84A	103	1502	175,635,000	17,563,500	158,071,500	
141	84A	103	1602	175,635,000	17,563,500	158,071,500	
142	84A	103	1702	175,635,000	17,563,500	158,071,500	
143	84A	103	1802	175,635,000	17,563,500	158,071,500	
144	84A	103	203	175,635,000	17,563,500	158,071,500	
145	84A	103	303	175,635,000	17,563,500	158,071,500	
146	84A	103	403	175,635,000	17,563,500	158,071,500	
147	84A	103	503	175,635,000	17,563,500	158,071,500	
148	84A	103	603	175,635,000	17,563,500	158,071,500	
149	84A	103	703	175,635,000	17,563,500	158,071,500	
150	84A	103	803	175,635,000	17,563,500	158,071,500	
151	84A	103	903	175,635,000	17,563,500	158,071,500	
152	84A	103	1003	175,635,000	17,563,500	158,071,500	
153	84A	103	1103	175,635,000	17,563,500	158,071,500	
154	84A	103	1203	175,635,000	17,563,500	158,071,500	
155	84A	103	1403	175,635,000	17,563,500	158,071,500	
156	84A	103	1503	175,635,000	17,563,500	158,071,500	
157	84A	103	1603	175,635,000	17,563,500	158,071,500	
158	84A	103	1703	175,635,000	17,563,500	158,071,500	
159	84A	103	1803	175,635,000	17,563,500	158,071,500	

160	84B	103	104	176,710,000	17,671,000	159,039,000	
161	84B	103	204	176,710,000	17,671,000	159,039,000	
162	84B	103	304	176,710,000	17,671,000	159,039,000	
163	84B	103	404	176,710,000	17,671,000	159,039,000	
164	84B	103	504	176,710,000	17,671,000	159,039,000	
165	84B	103	604	176,710,000	17,671,000	159,039,000	
166	84B	103	704	176,710,000	17,671,000	159,039,000	
167	84B	103	804	176,710,000	17,671,000	159,039,000	
168	84B	103	904	176,710,000	17,671,000	159,039,000	
169	84B	103	1004	176,710,000	17,671,000	159,039,000	
170	84B	103	1104	176,710,000	17,671,000	159,039,000	
171	84B	103	1204	176,710,000	17,671,000	159,039,000	
172	84B	103	1304	176,710,000	17,671,000	159,039,000	
173	84B	103	1404	176,710,000	17,671,000	159,039,000	
174	84B	103	1504	176,710,000	17,671,000	159,039,000	
175	84B	103	1604	176,710,000	17,671,000	159,039,000	
176	84B	103	1804	176,710,000	17,671,000	159,039,000	
177	67B	104	201	143,152,000	14,315,200	128,836,800	
178	67B	104	301	143,152,000	14,315,200	128,836,800	
179	67B	104	401	143,152,000	14,315,200	128,836,800	
180	67B	104	501	143,152,000	14,315,200	128,836,800	
181	67B	104	601	143,152,000	14,315,200	128,836,800	
182	67B	104	701	143,152,000	14,315,200	128,836,800	
183	67B	104	801	143,152,000	14,315,200	128,836,800	
184	67B	104	901	143,152,000	14,315,200	128,836,800	
185	67B	104	1001	143,152,000	14,315,200	128,836,800	
186	67B	104	1101	143,152,000	14,315,200	128,836,800	
187	67B	104	1201	143,152,000	14,315,200	128,836,800	
188	67B	104	1301	143,152,000	14,315,200	128,836,800	
189	67B	104	1401	143,152,000	14,315,200	128,836,800	
190	67B	104	1501	143,152,000	14,315,200	128,836,800	
191	67B	104	1601	143,152,000	14,315,200	128,836,800	
192	67B	104	1701	143,152,000	14,315,200	128,836,800	

193	67B	104	1801	143,152,000	14,315,200	128,836,800	
194	67A	104	202	144,255,000	14,425,500	129,829,500	
195	67A	104	302	144,255,000	14,425,500	129,829,500	
196	67A	104	402	144,255,000	14,425,500	129,829,500	
197	67A	104	502	144,255,000	14,425,500	129,829,500	
198	67A	104	602	144,255,000	14,425,500	129,829,500	
199	67A	104	702	144,255,000	14,425,500	129,829,500	
200	67A	104	802	144,255,000	14,425,500	129,829,500	
201	67A	104	902	144,255,000	14,425,500	129,829,500	
202	67A	104	1002	144,255,000	14,425,500	129,829,500	
203	67A	104	1102	144,255,000	14,425,500	129,829,500	
204	67A	104	1202	144,255,000	14,425,500	129,829,500	
205	67A	104	1302	144,255,000	14,425,500	129,829,500	
206	67A	104	1402	144,255,000	14,425,500	129,829,500	
207	67A	104	1502	144,255,000	14,425,500	129,829,500	
208	67A	104	1602	144,255,000	14,425,500	129,829,500	
209	67A	104	1702	144,255,000	14,425,500	129,829,500	
210	67A	104	1802	144,255,000	14,425,500	129,829,500	
211	67A	104	103	144,255,000	14,425,500	129,829,500	
212	67A	104	203	144,255,000	14,425,500	129,829,500	
213	67A	104	303	144,255,000	14,425,500	129,829,500	
214	67A	104	403	144,255,000	14,425,500	129,829,500	
215	67A	104	503	144,255,000	14,425,500	129,829,500	
216	67A	104	603	144,255,000	14,425,500	129,829,500	
217	67A	104	703	144,255,000	14,425,500	129,829,500	
218	67A	104	803	144,255,000	14,425,500	129,829,500	
219	67A	104	903	144,255,000	14,425,500	129,829,500	
220	67A	104	1103	144,255,000	14,425,500	129,829,500	
221	67A	104	1203	144,255,000	14,425,500	129,829,500	
222	67A	104	1303	144,255,000	14,425,500	129,829,500	
223	67A	104	1403	144,255,000	14,425,500	129,829,500	
224	67A	104	1803	144,255,000	14,425,500	129,829,500	
225	67B	104	104	143,152,000	14,315,200	128,836,800	

226	67B	104	204	143,152,000	14,315,200	128,836,800	
227	67B	104	304	143,152,000	14,315,200	128,836,800	
228	67B	104	404	143,152,000	14,315,200	128,836,800	
229	67B	104	504	143,152,000	14,315,200	128,836,800	
230	67B	104	604	143,152,000	14,315,200	128,836,800	
231	67B	104	704	143,152,000	14,315,200	128,836,800	
232	67B	104	804	143,152,000	14,315,200	128,836,800	
233	67B	104	904	143,152,000	14,315,200	128,836,800	
234	67B	104	1004	143,152,000	14,315,200	128,836,800	
235	67B	104	1104	143,152,000	14,315,200	128,836,800	
236	67B	104	1204	143,152,000	14,315,200	128,836,800	
237	67B	104	1304	143,152,000	14,315,200	128,836,800	
236	67B	104	1404	143,152,000	14,315,200	128,836,800	
239	67B	104	1504	143,152,000	14,315,200	128,836,800	
240	67B	104	1604	143,152,000	14,315,200	128,836,800	
241	67B	104	1704	143,152,000	14,315,200	128,836,800	
242	67B	104	1804	143,152,000	14,315,200	128,836,800	
243	67B	105	101	143,152,000	14,315,200	128,836,800	
244	67B	105	201	143,152,000	14,315,200	128,836,800	
245	67B	105	301	143,152,000	14,315,200	128,836,800	
246	67B	105	401	143,152,000	14,315,200	128,836,800	
247	67B	105	501	143,152,000	14,315,200	128,836,800	
248	67B	105	601	143,152,000	14,315,200	128,836,800	
249	67B	105	701	143,152,000	14,315,200	128,836,800	
250	67B	105	801	143,152,000	14,315,200	128,836,800	
251	67B	105	901	143,152,000	14,315,200	128,836,800	
252	67B	105	1001	143,152,000	14,315,200	128,836,800	
253	67B	105	1101	143,152,000	14,315,200	128,836,800	
254	67B	105	1201	143,152,000	14,315,200	128,836,800	
255	67B	105	1301	143,152,000	14,315,200	128,836,800	
256	67B	105	1401	143,152,000	14,315,200	128,836,800	
257	67B	105	1501	143,152,000	14,315,200	128,836,800	
258	67B	105	1601	143,152,000	14,315,200	128,836,800	

259	67B	105	1701	143,152,000	14,315,200	128,836,800	
260	67B	105	1801	143,152,000	14,315,200	128,836,800	
261	67A	105	102	144,255,000	14,425,500	129,829,500	
262	67A	105	202	144,255,000	14,425,500	129,829,500	
263	67A	105	302	144,255,000	14,425,500	129,829,500	
264	67A	105	402	144,255,000	14,425,500	129,829,500	
265	67A	105	502	144,255,000	14,425,500	129,829,500	
266	67A	105	602	144,255,000	14,425,500	129,829,500	
267	67A	105	702	144,255,000	14,425,500	129,829,500	
268	67A	105	802	144,255,000	14,425,500	129,829,500	
269	67A	105	902	144,255,000	14,425,500	129,829,500	
270	67A	105	1002	144,255,000	14,425,500	129,829,500	
271	67A	105	1102	144,255,000	14,425,500	129,829,500	
272	67A	105	1202	144,255,000	14,425,500	129,829,500	
273	67A	105	1302	144,255,000	14,425,500	129,829,500	
274	67A	105	1402	144,255,000	14,425,500	129,829,500	
275	67A	105	1502	144,255,000	14,425,500	129,829,500	
276	67A	105	1602	144,255,000	14,425,500	129,829,500	
277	67A	105	1702	144,255,000	14,425,500	129,829,500	
278	67A	105	1802	144,255,000	14,425,500	129,829,500	
279	67A	105	103	144,255,000	14,425,500	129,829,500	
280	67A	105	203	144,255,000	14,425,500	129,829,500	
281	67A	105	303	144,255,000	14,425,500	129,829,500	
282	67A	105	403	144,255,000	14,425,500	129,829,500	
283	67A	105	503	144,255,000	14,425,500	129,829,500	
284	67A	105	603	144,255,000	14,425,500	129,829,500	
285	67A	105	703	144,255,000	14,425,500	129,829,500	
286	67A	105	803	144,255,000	14,425,500	129,829,500	
287	67A	105	903	144,255,000	14,425,500	129,829,500	
288	67A	105	1003	144,255,000	14,425,500	129,829,500	
289	67A	105	1103	144,255,000	14,425,500	129,829,500	
290	67A	105	1203	144,255,000	14,425,500	129,829,500	
291	67A	105	1303	144,255,000	14,425,500	129,829,500	

292	67A	105	1403	144,255,000	14,425,500	129,829,500	
293	67A	105	1503	144,255,000	14,425,500	129,829,500	
294	67A	105	1603	144,255,000	14,425,500	129,829,500	
295	67A	105	1703	144,255,000	14,425,500	129,829,500	
296	67A	105	1803	144,255,000	14,425,500	129,829,500	
297	67B	105	104	143,152,000	14,315,200	128,836,800	
298	67B	105	204	143,152,000	14,315,200	128,836,800	
299	67B	105	304	143,152,000	14,315,200	128,836,800	
300	67B	105	404	143,152,000	14,315,200	128,836,800	
301	67B	105	504	143,152,000	14,315,200	128,836,800	
302	67B	105	604	143,152,000	14,315,200	128,836,800	
303	67B	105	704	143,152,000	14,315,200	128,836,800	
304	67B	105	804	143,152,000	14,315,200	128,836,800	
305	67B	105	904	143,152,000	14,315,200	128,836,800	
306	67B	105	1004	143,152,000	14,315,200	128,836,800	
307	67B	105	1104	143,152,000	14,315,200	128,836,800	
308	67B	105	1204	143,152,000	14,315,200	128,836,800	
309	67B	105	1304	143,152,000	14,315,200	128,836,800	
310	67B	105	1404	143,152,000	14,315,200	128,836,800	
311	67B	105	1504	143,152,000	14,315,200	128,836,800	
312	67B	105	1604	143,152,000	14,315,200	128,836,800	
313	67B	105	1704	143,152,000	14,315,200	128,836,800	
314	67B	105	1804	143,152,000	14,315,200	128,836,800	
315	84C	106	101	173,606,000	17,360,600	156,245,400	
316	84C	106	201	173,606,000	17,360,600	156,245,400	
317	84C	106	301	173,606,000	17,360,600	156,245,400	
318	84C	106	401	173,606,000	17,360,600	156,245,400	
319	84C	106	501	173,606,000	17,360,600	156,245,400	
320	84C	106	701	173,606,000	17,360,600	156,245,400	
321	84C	106	801	173,606,000	17,360,600	156,245,400	
322	84C	106	901	173,606,000	17,360,600	156,245,400	
323	84C	106	1001	173,606,000	17,360,600	156,245,400	
324	84C	106	1101	173,606,000	17,360,600	156,245,400	

325	84C	106	1201	173,606,000	17,360,600	156,245,400	
326	84C	106	1401	173,606,000	17,360,600	156,245,400	
327	84A	106	102	175,635,000	17,563,500	158,071,500	
328	84A	106	302	175,635,000	17,563,500	158,071,500	
329	84A	106	402	175,635,000	17,563,500	158,071,500	
330	84A	106	602	175,635,000	17,563,500	158,071,500	
331	84A	106	702	175,635,000	17,563,500	158,071,500	
332	84A	106	802	175,635,000	17,563,500	158,071,500	
333	84A	106	902	175,635,000	17,563,500	158,071,500	
334	84A	106	1002	175,635,000	17,563,500	158,071,500	
335	84A	106	1102	175,635,000	17,563,500	158,071,500	
336	84A	106	1202	175,635,000	17,563,500	158,071,500	
337	84A	106	1302	175,635,000	17,563,500	158,071,500	
338	84A	106	1402	175,635,000	17,563,500	158,071,500	
339	84A	106	1502	175,635,000	17,563,500	158,071,500	
340	84A	106	1602	175,635,000	17,563,500	158,071,500	
341	84A	106	1702	175,635,000	17,563,500	158,071,500	
342	84A	106	1802	175,635,000	17,563,500	158,071,500	
343	84A	106	103	175,635,000	17,563,500	158,071,500	
344	84A	106	203	175,635,000	17,563,500	158,071,500	
345	84A	106	303	175,635,000	17,563,500	158,071,500	
346	84A	106	403	175,635,000	17,563,500	158,071,500	
347	84A	106	503	175,635,000	17,563,500	158,071,500	
348	84A	106	703	175,635,000	17,563,500	158,071,500	
349	84A	106	803	175,635,000	17,563,500	158,071,500	
350	84A	106	903	175,635,000	17,563,500	158,071,500	
351	84A	106	1003	175,635,000	17,563,500	158,071,500	
352	84A	106	1103	175,635,000	17,563,500	158,071,500	
353	84A	106	1203	175,635,000	17,563,500	158,071,500	
354	84A	106	1303	175,635,000	17,563,500	158,071,500	
355	84A	106	1403	175,635,000	17,563,500	158,071,500	
356	84A	106	1503	175,635,000	17,563,500	158,071,500	
357	84A	106	1603	175,635,000	17,563,500	158,071,500	

358	84A	106	1803	175,635,000	17,563,500	158,071,500	
359	84B	106	104	176,710,000	17,671,000	159,039,000	
360	84B	106	204	176,710,000	17,671,000	159,039,000	
361	84B	106	304	176,710,000	17,671,000	159,039,000	
362	84B	106	404	176,710,000	17,671,000	159,039,000	
363	84B	106	504	176,710,000	17,671,000	159,039,000	
364	84B	106	604	176,710,000	17,671,000	159,039,000	
365	84B	106	704	176,710,000	17,671,000	159,039,000	
366	84B	106	804	176,710,000	17,671,000	159,039,000	
367	84B	106	904	176,710,000	17,671,000	159,039,000	
368	84B	106	1004	176,710,000	17,671,000	159,039,000	
369	84B	106	1104	176,710,000	17,671,000	159,039,000	
370	84B	106	1204	176,710,000	17,671,000	159,039,000	
371	84B	106	1304	176,710,000	17,671,000	159,039,000	
372	84B	106	1404	176,710,000	17,671,000	159,039,000	
373	84B	106	1504	176,710,000	17,671,000	159,039,000	
374	84B	106	1604	176,710,000	17,671,000	159,039,000	
375	84B	106	1704	176,710,000	17,671,000	159,039,000	
376	84B	106	1804	176,710,000	17,671,000	159,039,000	